

# 우체국보험 리스크관리 지침

제정 2011. 1. 1.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28호  
개정 2012.12.12.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80호  
개정 2015. 7.22.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139호  
개정 2015.12.15.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143호  
개정 2017. 1.26.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173호  
개정 2018. 2.28.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194호  
개정 2018. 5. 4.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199호  
개정 2020. 9.14.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246호  
개정 2020.12. 7.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255호  
개정 2021. 2. 1. 우정사업본부 예규 제276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의거 고시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안정성 및 지속적 성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Risk)”라 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가능성을 말한다.

2. “리스크관리”라 함은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를 인식, 측정 및 평가, 통제 및 보고하는 절차와 그 행위를 말한다.
3. “보험리스크”라 함은 이상사태의 발생이나 경제 환경 등의 변화에 의해 보험료 설정 시 예상한 수준을 초과하여 보험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금리리스크”라 함은 시장금리의 변동 및 자산·부채의 만기, 금리 조건 등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순이자소득 또는 순자산가치의 감소 위험을 말한다.
5. “시장리스크”라 함은 금융시장에서 금리, 주가 및 환율 등 시장 가격의 불리한 변화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6. “신용리스크”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나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7. “유동성리스크”라 함은 자금의 운용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상치 못한 자금 유출 등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8.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의 사건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9. “위기상황 리스크관리”라 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위험 정도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말한다.
10. “고위험투자상품 리스크”라 함은 대체투자상품 및 파생결합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말한다.

11. “리스크 허용한도” 라 함은 리스크관리의 기준이 되는 설정 값으로 관리 시 용인되는 최대 리스크량을 말한다.

② 동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고 사용된 용어는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통용되는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보험사업 또는 적립금 운용에 있어 손실 발생의 위험을 부담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③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2장 리스크관리 조직

제4조(리스크관리조직의 구성) 우체국보험의 리스크관리 조직은 분과위원회, 우체국보험위험관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 리스크관리 부서, 사업부서, 결제부서로 구성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②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분과위

원회 검토·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 기본계획과 방침
2. 위험 종류별 한도 설정·관리와 대책수립
3. 위험 관리 지침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제217호)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종류의 수정
5.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험 관리에 관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① 분과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리스크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가 정한 주요정책에 기초한 세부관리방안 수립
2.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사전 협의 및 위임사항의 처리
3. 각종 리스크관리 지표, 운영한도 등의 설정 협의
4. 보험적립금 운용성과 및 경영수지 현황 보고
5. 예정이율, 공시이율 및 환급금대출이율 등의 조정
6. 그밖에 리스크관리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2(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 보험정책업무 담당, 보험회계업무 담당, 리스크총괄업무 담당, 신용·시장리스크업무 담당, 자산배분·성과관리업무 담당, 청약기획업무 담당, 상품개발업무 담당, 영업전략업무 담당, 주식운용업무 담당, 국내채권업무 담당, 해외채권업무 담당, 실물자산업무 담당, 사모주식업무 담당, 사모크레딧업무 담당
2.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 예금위험관리과 리스크총괄업무 담당
3. 우체국금융개발원 : 보험상품개발업무 팀장, 회계계리업무 팀장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보험위험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업무지원 및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험위험관리과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6조의3(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관련부서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협의한다.

③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 주요 안건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주제 및 주요 토론사항 등

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리스크관리부서)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사업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스크관리 연간 계획 수립 및 관리
2.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련 부서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 통지 및 사후관리
4. 리스크의 측정, 평가 및 조정기능 수행
5.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관리
6. 리스크의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7. 리스크관리기법 연구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운영
8. 리스크관리 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부문별 리스크관리에 있어 사전리스크 검토
10. 지급여력비율 측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11. 그밖에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리스크관리부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리스크관리의 전문성 및 효

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부서 및 결제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부서) ① 사업부서는 보험사업 또는 보험적립금 운용에 있어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서로서 리스크관리부서 및 결제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1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제반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장은 당해부서의 리스크를 감독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할 책임을 진다.

④ 사업부서는 보험적립금 운용에 관한 세부기준 또는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에 이를 리스크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결제부서) ① 결제부서는 거래행위에 따른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사업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와 독립되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의 필요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결제업무를 리스크관리부서 내에 둘 수 있다.

### 제3장 리스크관리 업무

제10조(리스크관리 기본원칙) 리스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상품과 업무에 내재된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리스크는 정확히 인식, 측정하되 가능한 한 계량화 또는 등급화하여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적정하게 리스크를 통제한다.
3. 과도한 리스크의 방지를 위하여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4. 특정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해야 한다.
5. 리스크관리의 감독 및 통제는 전사적·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리스크관리는 수익성과 균형있게 추구하여야 한다.
7. 리스크관리는 문서 등 공식화된 절차 또는 방법에 의한다.

제11조(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원칙) ① 리스크 허용한도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한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정책 또는 전략을 감안하여 설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② 리스크 허용한도는 우체국보험이 부담할 통합리스크 및 부문별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세부적으로 지역별, 고위험 상품별 등으로 구분하여 한도를 설정·운영한다.

③ 리스크 허용한도는 연도별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변경)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부문별 리스크 한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회 협의



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리스크관리부서는 한도설정 시 환경변화에 따른 한도의 조정, 자기자본과 영업이익, 경영전략, 리스크정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경영환경이나 정책의 변경, 보험적립금 운용성과, 위험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스크 허용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협의 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산 운용 과정에서 부문별 리스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통합리스크 한도 내에서 부문별 리스크 한도에 대한 조정 또는 유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차기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리스크 허용한도 모니터링) ① 사업부서는 리스크 허용한도 준수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을 가지며, 리스크관리 부서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정된 한도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부서는 부문별 리스크 허용한도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유동성의 위기 등 현저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허용한도 초과 시 그 내역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리스크 허용한도 관리책임)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부문별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기준, 측정방법, 관리 절차 및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수시로 리스크 허용한도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리스크 허용한도 범위 안에서 운용한도 등 세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설정된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적 리스크 분석) ① 다음 각 호의 신규 사업 도입, 상품 수정 및 투자(이하 “신규 사업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반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 신규 사업 등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존에 취급하지 않던 신규 사업의 도입
2. 동규정 제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보험종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고위험상품 투자
4. 제3호에 의한 투자상품 중에서 투자 결정한 이후 상품구조가 변경되는 경우(투자된 상품의 재구조화 포함)
5. 기타 리스크 분석이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한 투자

② 신규 사업 등을 도입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사전에 리스크에 대한 자체 분석 내용이 포함된 관련 자료를 리스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한다.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신규 사업 등의 리스크에 대한 심의·검토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부서장은 심의·검토 결과를 신규 사업

등의 도입·취급 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부문별 리스크관리 등) 개별리스크 관리대상, 원칙,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17조(위기상황분석) 위기상황에 대한 우체국보험의 잠재적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금리·시장·신용리스크 등 리스크별 위기상황분석 및 통합 위기상황은 자체 리스크 특성에 맞게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2.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가정의 유효성 여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기상황 분석의 방법론 및 유효성을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위기상황 관리 대책) 리스크관리부서는 보험자산의 손실발생 규모와 가치하락 규모 등이 보험사업의 지속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수준 발생에 대비하여 이에 따른 위기상황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리스크관리부서의 리스크 보고) ①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 측정 및 분석을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험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쳐 분과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 관리부서는 각 사업부서의 거래자료를 총괄하여 리스크를 자산별, 부서별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리스크관리부서는 경영환경 및 시장상황이 급변하거나 우체국보험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과

대책 등을 보험사업단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관리 보고의 내용이 우체국보험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시성, 정확성, 객관적 분석의견을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리스크관리부서는 주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점검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대체투자 사후관리) 리스크관리부서는 직접운용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점검 내역을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리스크관리부서는 위험기준 경영실태 평가(RAAS)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부서의 리스크 보고) ① 사업부서는 보험사업 또는 적립금 운용에 있어 손실이 발생하거나 재무건전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리스크관리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있어 특별히 위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가능성이 높음을 업무수행 중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리스크관리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부서 또는 부문 내 발생하는 리스크관련 정보에 대하여 보험사업단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해외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 사업부서는 해외자산에 투자할 경우 환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투자이후에는 해외자산의 환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해외자산 투자현황, 환헤지 방안 및 환에 대한 성과를 분과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조정 성과측정) ① 사업부서의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운용 성과와 비용 및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사업부서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부서의 성과를 측정할 경우에는 트레이딩 활동으로 인한 성과에 리스크조정 후 성과를 산출하고, 리스크 허용한도 및 규정위반 사항도 감안하여야 한다.

③ 성과측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4장 내부감사 및 부정행위 통제

제21조(내부감사) 리스크관리부서는 규정 및 실무지침의 준수와 보고서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내부감사부서에 사업부서의 감사를 상시 요청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는 리스크관리상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언제든지 내부감사부서에 사업부서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부정행위 통제) 리스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의 거래한도 또는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감사부서에 통보 조치한다.

1. 규정 및 실무지침의 규정된 바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2. 거래현황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에 보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3. 리스크관리부서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통보한 경우
4.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리스크관리부서와의 합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수행한 경우

제23조(규정 위반 시 조치) ① 분과위원회는 직원이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사항의 해소요구
  2. 리스크한도 및 포지션의 축소조정 또는 기존 포지션의 해지
  3.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4. 해당 업무의 일시 정지
  5. 기타 인사상의 조치 건의
- ② 분과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장 기 타

제24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의 개정은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한다. 다만, 내규의 변동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이나 단순한 문구수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실무지침 등) ①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② 리스크관리상 계량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스템 인프라를 갖 추기 전까지 간이적인 방법의 계량화지표로 관리할 수 있다.

### 부 칙<제28호, 2011.1.1>

우체국보험리스크관리규정(내부지침)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

### 부 칙<제80호, 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우체국보험위험관리실무협의회운영규정(내부지침, 2008.2.1. 제정, 2011.9.8. 개정)은 이 규정 시행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제139호, 2015.7.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3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3호, 2017.1.26.>

이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4호, 2018.2.28.>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호, 2018. 5. 4.>

이 규정은 2018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46호, 2020. 9. 14.>

이 규정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5호, 2020. 12. 7>

이 지침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000호, 2021. 2. 1>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